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7년 3월 9일(금)

14th

■ 발행인: 이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여백(02-2279-9631)

[제25기 주주총회에 대한 KT노동조합의 입장] 직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배당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3월 16일 KT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2006년 KT는 20%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성장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과열경쟁과 유선전화의 감소 속에서도 이뤄낸 큰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에는 구성원의 피나는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임금동결로 인건비는 249억원이 감소했다. 매년 차기년도에 반영하던 실적연동 성과급(1,200억원)을 당해년도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다. 2006년 평균 임금인상율이 5%가 넘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합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

루 말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조합원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금동결에 합의한 것은 KT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투자는 기업의 든든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통신산업에서는 시설 투자, 인력 투자가 곧 자산이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된다. 노동조합의 임금동결 합의와 사외이사 진출투쟁 유보는 바로 이러한 투자를 확대하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정작 KT는 2000년 3조4천억을 정점으로 설비투자가 축소돼 2006년 2조2천억원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KT의 설비투자 축소가 여분의 못매를 맞자 3조원까지 확대하겠

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망의 유지보수와 BcN, FTTH, IPTV, 와이브로 등 신규 시설 투자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KT의 장기성장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측은 매년 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과 주식 소각에 사용하고 있다. 너무나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KT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통은 조합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전가하면서 성과는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조합원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전체배당의 70% 이상을 외국인에게 지급되

고 있는 현실은 더더욱 그렇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업체들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은 75억740만 달러로 경상수지 흑자액 60억9260만달러를 앞질렀다고 한다. 대표적인 내수산업체인 KT가 과연 무엇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환원을 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주주배당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주주와 고객, 직원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에게 기울이는 관심만큼 직원들에게도 공정한 성과를 배분하

고 고객에게는 설비투자 확대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요구해온 배분제도가 바로 주주, 고객, 직원의 가치를 공정하게 인정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고통분담을 원한다면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 그리고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느 일방의 헌신과 고통은 오래갈 수 없음을 사측은 빠른 시일내 깨닫길 바란다.

2006년 하반기 회계감사 총평



2006년도 하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2007년 2월 5일~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김진욱 회계감사 대표위원은 감평을 통해 "행정조직 5년 지도6년이 발생했다"면서도 "회계업무 전산화에 따른 감사자료 상태가 양호하며 상반기에 지적된 금액이 전액 환수조치된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전반기에 지적 사항 중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으며

금번 감사에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정을 요구했다.

자재시 위원장은 "회계감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정조치와 함께 회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조합원의 혈세인 조합비를 더욱 아껴쓰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PTV 자회사 분리 방안 반대 선언

KT노동조합은 지난 7일 목동방송회관에서 방송위가 개최한 IPTV 법안 관련 토론회장에 IT연맹과 함께 "방송위의 IPTV 도입방안은 IPTV 지연작전"이고 "KT만 자회사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은 케이블TV사업자의 기득권을 위한 꼼수"라는 반발의 성명서를 나눠주며 방송위의 IPTV 도입방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IPTV 도입을 저지할 것이며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조속한 통방융합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7년 3월 성과급 지급

2006년 부서(기관)별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3월 성과급 지급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가. 지급률 : 127.5% ± 15%
(최소 112.5%, 최대 142.5%)
나. 평가기간 : 2006.01.01 ~ 2006.12.31
다. 3월 지급률 : 지난 1월 100% 조기지급을 뺀 잔여를 지급 (최소12.5%, 최대42.5%)
라. 지급일자 : 2007.03.23 급여일
마. 지급계좌 : 급여계좌
바. 관련 규정 : 보수규정

하계 유니폼 품평회 및 지급계획

2007년 하계 유니폼 품평회 및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가. 대상 품목 : KT프리카, IT서포터즈 유니폼 <참고> 작업복, 고객 방문복은 부분보완 후 지급
나. 1차 품평회
-일 시 : 2007.03.09(금) 10:30
-품평위원 : 노사 각 5명
다. 현장직원 의견수렴
-기간 : 2007.03.12(월) ~ 03.14(수)
-대상기관 : 본사 외지사 4곳
-내용 : 디자인 및 품질 의견수렴

라. 2차 품평회
-일 시 : 2007.03.15(목) 14:00
-품평위원 : 노사 각 4명
마. 지급계획
-디자인 보완 : ~ 03.31 까지
-원단 및 부자재 생산 : ~ 04.13 까지
-봉제 및 납품 : ~ 04.30 까지
-착 용 : 05.01 부터 ~

IPTV조속히 도입하라

소모적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4년이 넘는 기간동안 5000여회가 넘는 토론회를 거치는 등 수많은 논쟁을 거듭해왔지만 여전히 관할 법, 규제기구에 대한 그림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수조원의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IPTV사업은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IPTV사업을 대선정국까지 연기시키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융합의 정신에 입각해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공정하게 허용해야 한다.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KT가 마치 방송전체를 독식하려는 공룡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케이블TV사업자들이 지역을 독점하고 있으며 자체 망을 소유하면서 오히려 통신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나눠먹기 사업이 아닌 국민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

사업자 보호를 위해 나눠먹기를 해서는 안된다. 케이블TV사업자의 독점권을 인정해주는바람에 국민들은 채널선택권을 박탈당했다. IPTV도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지역면허 정책은 지역특점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일 뿐이다.

경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렇게 피해주세요?" 경총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 내부 책자 통해 법익용 부추키

한겨레신문은 6일 "올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월 중순 '2년 뒤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은 공식 책자를 제작·배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총은 이 책자에서 '정규직화'를 피해 갈 수 있는 여러 법률적 허점을 소개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 취지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이 펴낸 7쪽 분량의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자를 보면,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설명하면서 법 취지와 다른 법규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비정규직법의 폐대 중 하나는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경총은 책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법정 사용기간(2년) 이내에서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들테만 한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2년에서 며칠 모자란 720여일간 고용하고, 한두 달 쉰 뒤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라며

경총이 발간한 사용자 구미에 맞는 비정규법 활용방법을 꼬집고 있다.

한편 신문은 "또 경총은 같은 직무에 비정규직을 최대 4년 동안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알려주고 있다"며 "책자에는 '파견 근로자를 2년 사용하고 동일 직무에 사용했던 파견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2년까지 고용 가능)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소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총은 이와 함께 고령자 인력활용 차원에서 55살 이상일 경우 '2년 뒤 정규직화'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조항을 이용해, 53살 근로자를 2년 계약직으로 고용하면 이 근로자가 55살이 된 뒤에는 계속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으로 2년 뒤 정규직이 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법의 맹점도 드러냈다. 우리는 행 여직원의 정규직화처럼 고용안정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존 정규직과 격차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어도, 고용의무 규정만으로는 이행 강제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는 곤란하다"는 등 전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보다는 법을 '악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자세히 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보호입법'이라며 지난 해 말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일방 강행 통과됐다.

“2007년을 진보진영 승리의 해로 만들자”

한국진보연대(준)·전농·민주노총 지도부 2007년 신년 간담회

한국진보연대(준)·전농·민주노총 지도부가 강력한 노농연대와 한국진보연대(준)의 올해 본 조직 건설을 위한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세 지도부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7층 공무원노동조합 강당에서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각 단위별 2007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노농연대 사업 관련 평가에 이어 올해 노농연대 사업 강화를 위한 토론을 펼쳤다.

올해 상반기 본조직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준)은 △반신자유주의세계화 △반전평화 △자주통일운동 △사회공공성 강화, 빈곤해소 및

사회복지, 비정규직 문제 △민주인권 △민중생존권 △6~7월 특별사업 △대선투쟁 △정책기획사업 △조직원사업 △교육전선사업 △연료홍보사업 △국제연대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농도 △한미FTA승리, 중국, EU 등 동시다발 FTA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저지 △식량주권쟁취, 통일농업 실현의 우리식 농정대안 상과 전망 제시 △쌀 값 보장, 식량주권 쟁취, 농협개혁 등 농정과제 적극적 대응 △농민연합 강화와 한국진보연대(준) 건설 통한 연대전선 강화 △대선투쟁 승리 △조직혁신 강화를 비롯한 중점사업계획을 밝혔다. 또 연대사업 관련해 △민족민주진영 연

대연합 강화 △노농연대 강화 △농민단체간 연대 연합 강화 △농학연대 △농민열사 추모사업 방침을 표명했다.

올해 초 새로 꾸러진 민주노총 5기 임지도부는 향후 3년간 사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5대 사업목표와 방향으로 △강력한 조직력 구축 △통합과 단결, 혁신 △사회적 약자와 연대로 계급대표성 강화 △민주노총 사회적 역할 강화 △연대전선 강화로 노동운동 영향력 확대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3년 임기 전반기(2007년 2월~2008년 7월)와 후반기(2008년 8월~2009년 12월) 각각 10대 과제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전반기 과제로 △1차 현장대장정과 교육원 설립 및 전간부 교육체계 확립 △한미 FTA협상 저지,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산재법 전면개혁 투쟁 △최저임금 쟁취투쟁 △산별교섭 법제화 및 산별임단투 총력지원 투쟁 △한반도 평화와 반전평화투쟁 △직선제, 재정혁신 등 규약개정 의결 및 노동운동혁신위원회 가동 △미디어 매체발전 3개년 계획 수립 및 현장문제운동 활성화사업 △5.1절 남북노동자대회 및 87년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노조 1능동회 자매결연 및 한국진보연대 본조직 출범 △민주노동당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투쟁 승리를 설정했다. 또 후

반기 10대 과제로 △2차 현장대장정과 현장조직력 강화 △10만 간부교육사업 및 현장문제운동 활성화 △비정규 노동자 산별노조 가입운동 전개 △노동운동혁신위원회 보고서 채택 및 민주노총 발전과제 수립 △새로운 교섭전략기술 재정립 △최저임금 쟁취 총파업투쟁 전개 △노동기분권 쟁취 전면투쟁 △2009년 8월까지 직선제 준비완료 △최저생계비 현실화투쟁 △진보적 경제산업정책 사회화투쟁 및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보고했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첫 정례협의회 열어 | 한미 FTA저지투쟁, 대통령후보 선출방안, 대선후원금 모집방안등 논의

올해 들어 민주노총-민주노동당 1차 정례협의회가 3월 7일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이석형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를 포함한 당 3명과 실무진 등이 배석했다.

1차 정례협의회에서 취급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사항>으로는 △민주노동당 2007년 사업방향 및 계획 △민주노총 2007년 사업방향 및 계획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제출됐다. <안건>으로는 △당명 한미FTA저지투쟁 △대통령후보 선출방안 △대선후원금 모

집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석형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선 취임 후 연 첫 정례협의회에 참석해 "민주노총과 당은 혈맹관계"라며 동지애적 감정을 표현하고 "민주노동당이 대선후보를 결정할 때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이어 "오는 11일 당 대의원대회에서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결정한다"며 "이석형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잡고 반드시 대선투쟁을 승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결의를 비쳤다.

첫째 보고 안건으로 <민주노동당 2007년 사업방향 및 계획>이 보고됐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2007년 사업방향과 관련해 '민생정당, 평화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기치로 2007-2008 정치적 승리-진보정당 재도약, 10만 당원 시대 새로운 진보정치 구현이라는 기조를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사업목표 및 과제로서 6대 정치적 목표와 3대 조직적 목표, 그리고 대선목표와 총선승리 태세 구축 과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했다.

두 번째 보고사항으로는 민주노총 2007

년 사업방향 및 계획이 보고됐다.

민주노총은 향후 3년간 사업방향과 과제로서 '현장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민주노총,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산별시대 민주노총, 민중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사업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사업목표와 방향 관련해 현장조직력 강화로 강력한 투쟁력 구축, 비정규 조직화로 계급대표성 강화, 산별체제 확립 산별시대 정착, 반전 평화 자주통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강화, 진보진영 총선거와 대선 총선 승리'라는 5대 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5대 사업부문을 포괄하는 영역별 연도별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7대 사업목표와 과제를 보고했다. 또 민주노총 주요 사업기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핵심 투쟁요구 사항과 제도개선 7대 요구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회의에 보고된 내용 중 주목할만한 점은 세 번째 보고안건인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회의결과,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하고 다수안에 입각한 입장을 내놨다. 여기서 민주노총은 당 중앙위에서 통과된 대선후

보 선출방안(당원 51%, 선거인단 49%가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당원과 민주노총, 전농 등 민주노동당 지지조직과 선거인단이 결합한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당원 이외 참여를 허용하는 당원개정에 찬성한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이 예시한 방안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선거인단을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모집하고 6월 중순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해 7월 후반까지 투표를 치른다는 것이다.

지부(분회)장 및 대의원 선출결과

지부(분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유재영(본사·자산개발센터지부)	전영래(부산·양정분회)	여영택(전남·동북포지부)
이도식(본사·대구고객센터지부)	윤상원(대구·안심분회)	신봉주(전남·동순천지부)
송승용(본사·Neoss센터지부)	최건호(대구·신석분회)	박승철(전북·팔복지부)
정해철(강남·복수원분회)	박영기(대구·법률분회)	이종훈(충남·충남네트워커지부)
이철(서부·동안양분회)	윤기보(대구·구미공단분회)	이광영(충남·유성지부)
이재식(강북·문산지부)	최시호(대구·신산분회)	신현진(충북·가림지부)
김형복(강북·능곡지부)	나중국(전남·송정지부)	장영기(충북·괴산분회)
정성호(강북·남양주지부)	이영오(전남·하남지부)	안종현(충북·음성분회)
황일용(부산·진영분회)	선종민(전남·상무지부)	

전국대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 본사 지부본부		
유준근(물류센터지부)	한강중(수도권 고객센터지부)	김대선(국제해저센터지부)
이성수(자산운용센터지부)	강봉석(영남권 고객센터지부)	노일철(기술지원본부지부)
한대용(자산개발센터지부)	이도식(대구고객센터지부)	김연수(기술지원본부지부)
신정영(인재개발센터지부)	윤오원(충청권 고객센터지부)	김진호(네트워킹센터지부)
임종태(본부지부)	김홍철(호남권 고객센터지부)	이홍찬(네트워킹기술연구소지부)
이철의(본부지부)	박종훈(유통지원센터지부)	허경욱(망관리본부지부)
황중욱(별령센터지부)	이창희(유통지원센터지부)	송승용(Neoss센터지부)
김석원(인프라센터지부)	홍익표(서울부동산센터지부)	박성규(위성운용센터지부)
임동철(솔루션지원센터지부)	조혜성(국제전회국지부)	유영도(물류센터지부)
김경은(솔루션지원센터지부)	김영범(신사업부문지부)	강석원(코넷운용센터지부)
신희만(B2C본부지부)	김광관(신사업부문지부)	조운정(코넷운용센터지부)
김중하(B2C본부지부)	조철형(국제통신택터지부)	
문덕규(수도권 고객센터지부)	이관배(국제위성센터지부)	

■ 강남 지부본부

장영호(강동지부)	최해철(송탄지부)	강세홍(하남지부)
유경규(송파지부)	윤세철(안성지부)	박경배(분당지부)
이강섭(고덕지부)	최성철(오산지부)	천영규(수내지부)
최영교(가락지부)	최연덕(서초지부)	한홍성(여주지부)
오은호(수원지부)	김성락(양재지부)	이문연(이천지부)
허창남(수원지부)	김중운(과천지부)	이찬의(강남망건설센터지부)
신양호(삼수원지부)	박준순(영등지부)	이권의(본부지부)
정성환(서수원지부)	이희선(영등지부)	이봉규(서울강동센터지부)
유기수(별안지부)	신성기(수서지부)	이종철(서울강남NSC지부)
고구봉(송수원지부)	남경우(신사지부)	박종필(경기남부NSC지부)
조승섭(송수원지부)	배문서(반포지부)	한창성(경기남부NSC지부)
조성영(영인지부)	김연대(성남지부)	김성희(경기남부NSC지부)
남대경(수지지부)	오덕환(광주지부)	조용희(경기동부NSC지부)
정우평(명덕지부)	류보현(모란지부)	

■ 강북 지부본부

이효순(광진지부)	정윤길(여의도지부)	김재구(서울북부NSC지부)
정익훈(동대문지부)	손진환(홍산지부)	김인숙(서울북부NSC지부)
이주호(성수지부)	송성길(은평지부)	이명희(서울북부NSC지부)
김용대(율지부)	김종만(계동지부)	양상승(교양지부)
박영호(전농지부)	강운식(서울중부NSC지부)	김형복(능곡지부)
송병희(종로지부)	박호기(서울중부NSC지부)	이재식(문산지부)
김종영(영등지부)	김종성(강북지부)	정중수(덕양지부)
임광호(종로지부)	천정환(공릉지부)	양경중(일산지부)
김명수(서울동부NSC지부)	김재은(노원지부)	이진구(파주지부)
김순서(서울동부NSC지부)	김정환(도봉지부)	조병환(구리지부)
윤삼섭(원효지부)	홍성모(방학지부)	이정환(가평지부)
김영만(가좌지부)	강경주(성북지부)	정성호(남양주지부)
김용우(평화초지부)	문순홍(월곡지부)	한귀영(동두천지부)
전영복(신촌지부)	박경수(청량지부)	한경희(동명동지부)
최정규(이현지부)	이희창(혜곡지부)	황건선(양평지부)

이원홍(의정부지부)	정성길(포천지부)	윤병문(강북망건설국지부)
정택근(전곡지부)	김석희(경기북부NSC지부)	이진욱(본부지부)
최학근(퇴계원지부)	성경희(경기북부NSC지부)	

■ 서부지부본부

임법기(구로지부)	박양근(인천공항지부)	유재덕(시흥지부)
김영필(금천지부)	한병덕(강화지부)	이영민(강서지부)
김진규(부천지부)	김종기(부천지부)	강일모(가양지부)
유상훈(관악지부)	박성기(동부천지부)	이성오(김포공항지부)
한재영(대방지부)	김동영(중동지부)	김혁중(목동지부)
장경석(인천지부)	강대연(북부천지부)	임창식(영등포지부)
허영미(인천지부)	조일환(부평지부)	김희원(개봉지부)
하준철(만수지부)	김오철(계양지부)	이범희(본부지부)
이영애(주안지부)	정지근(안양지부)	문경노(서부망건설센터지부)
전용철(송도지부)	홍순배(서안양지부)	최남진(경기서부NSC지부)
이현오(송의지부)	권용철(군포지부)	김건국(서울남부NSC지부)
이두석(연수지부)	김종만(호계지부)	김영덕(서울남부NSC지부)
백병현(항동지부)	임종민(안산지부)	김종현(서울남부NSC지부)
김용철(서안산지부)	이치수(안산지부)	이창수(인천NSC지부)
이광재(석남지부)	유광림(동안산지부)	김성수(인천NSC지부)
이한중(김포지부)	유수현(시흥지부)	김태영(인천서부NSC지부)

■ 부산 지부본부

김기준(동래지부)	황성규(해운대지부)	조수동(사천지부)
김성덕(금사지부)	김남호(기장지부)	정해준(삼천포지부)
이호우(미남지부)	곽홍태(수영지부)	김지수(남해지부)
김석득(금정지부)	김신석(울산지부)	이경복(하동지부)
최신철(김해지부)	임태복(남울산지부)	김광희(산청지부)
서부기(양산지부)	전영하(남울산지부)	김근식(양양지부)
황진한(밀양지부)	이민수(문산지부)	김주경(동진주지부)
백범기(서부산지부)	이석원(영양지부)	김재경(거창지부)
박승호(사하지부)	이영근(창원지부)	박지용(합천지부)
이명현(중부지부)	김미선(창원지부)	노충열(본부지부)
임욱정(영도지부)	박하린(진해지부)	김상천(부산강동건설센터지부)
정정석(북부산지부)	남동현(합안지부)	박성인(동래NSC지부)
김경남(북부산지부)	오차경(의령지부)	이광선(서부산NSC지부)
손희준(구포지부)	전영근(거제지부)	박성문(서부산NSC지부)
김정석(강서지부)	손현배(마산지부)	권상기(동부산NSC지부)
임재식(남부산지부)	정봉순(동마산지부)	김정택(울산NSC지부)
조태원(서면지부)	박진상(통영지부)	김영도(경남NSC지부)
이기근(가야지부)	정길운(거제지부)	김영운(경남진주망건설센터지부)
인창연(대연지부)	최재상(고성지부)	
이기학(동부산지부)	강동만(진주지부)	

■ 대구 지부본부

배우일(대구지부)	손상학(경산지부)	박명서(김천지부)
김학섭(북대구지부)	백명도(영천지부)	박종범(상주지부)
허운하(칠곡지부)	황성훈(하양지부)	김시동(안동지부)
손의진(군위지부)	류시화(수성지부)	이찬원(서안동지부)
정명호(예천지부)	변우영(수성지부)	권혁만(의성지부)
정영식(서대구지부)	이종근(상동지부)	김창진(영주지부)
임치환(성주지부)	박영록(청도지부)	심재은(봉화지부)
이자용(성서지부)	박명기(포항지부)	김상국(경주시)
노규송(공령지부)	박인숙(포항지부)	윤원상(예천지부)
전대현(남대구지부)	정병희(북포항지부)	이주하(본부지부)
박순복(북구지부)	최진환(영덕지부)	박준섭(대구망건설센터지부)
한효정(월배지부)	전중호(울진지부)	박추서(대구NSC지부)
김정현(달성지부)	김정훈(경주지부)	노광희(대구NSC지부)
허인택(동대구지부)	강영규(구미지부)	이광재(대구NSC지부)
하명애(동대구지부)	이금순(구미지부)	주경문(포항NSC지부)

이주일(안동NSC지부)	박병규(안동NSC구미지부)
--------------	----------------

■ 전남 지부본부		
윤재지(광주지부)	정영근(나주시지부)	정영순(순천지부)
류철용(목포지부)	김종범(영광지부)	박태순(여수지부)
신영수(광주지부)	박종광(목포지부)	권만중(여천지부)
김규근(장성지부)	류국성(동곡포지부)	정재훈(고흥지부)
정욱재(서광주지부)	김광주(안동지부)	강성영(광양지부)
강성봉(회산지부)	안승혁(해남지부)	최훈수(동순천지부)
이동우(남광주지부)	임광택(강진지부)	김동욱(광주NSC지부)
신종민(상무지부)	김갑춘(무안지부)	김유진(광주NSC지부)
김상정(남원지부)	김재현(영양지부)	박철오(목포NSC지부)
박연심(하남지부)	김현민(강송지부)	김철근(순천NSC지부)
김연희(송정지부)	김진성(진도지부)	이재덕(전남망건설센터지부)
정영우(해당지부)	김진욱(순천지부)	

■ 전북 지부본부		
최준덕(전주지부)	박승철(팔복지부)	김덕경(부안지부)
이철오(남전주지부)	김인수(동전주지부)	박재홍(전북망건설센터지부)
이문택(남원지부)	임정택(무주지부)	최정택(목포NSC지부)
최영오(익산시부)	최영우(정읍지부)	김상재(서부NSC지부)
박규만(군산지부)	이득택(김제지부)	황정석(서부NSC지부)
안인기(북전주지부)	송석호(고창지부)	안동훈(본부지부)

■ 충남 지부본부		
김경천(대전지부)	나연철(공주지부)	전해남(부여지부)
박경호(동대전지부)	이영준(조천지부)	김종래(서천지부)
유준선(동전지부)	박경순(천안지부)	김남경(보령지부)
김운철(신탄진지부)	황순철(천안지부)	안상표(본부지부)
윤은중(금산지부)	조규경(남천안지부)	이성형(충남망건설센터지부)
고은서(대전지부)	이종길(아산시부)	이성복(대전NSC지부)
오민택(대전지부)	서중모(충성지부)	서창원(대전NSC지부)
박종복(영무지부)	윤종준(청양지부)	오영태(대전NSC지부)
장대연(논산시부)	박영서(예산지부)	이종호(충남NSC지부)
한규순(논산시부)	박명선(서산시부)	이근주(충남NSC지부)
이광림(유성지부)	이규근(태안지부)	
임재한(북대전지부)	윤은주(당진지부)	

■ 충북 지부본부		
김석운(청주지부)	신현진(가정지부)	김호경(제천시부)
박경주(삼당지부)	박성하(옥천지부)	황익도(충북망건설센터지부)
장민철(진천지부)	박희삼(영동지부)	정숙영(충북NSC지부)
박성순(남청주지부)	남기태(충주지부)	김종민(충북NSC지부)
정지국(서청주지부)	마성현(금영지부)	

■ 강원 지부본부		
안승홍(원주지부)	심우승(춘천지부)	이영수(태백지부)
임도영(영성지부)	박희현(철원지부)	김창수(본부지부)
홍철희(영월지부)	이근태(강릉지부)	이종민(강원망건설센터지부)
최두승(평창지부)	김무문(속초지부)	박세우(춘천NSC지부)
손성열(춘천지부)	김철수(양양지부)	최재형(강릉NSC지부)
황원중(화천지부)	우창기(동해지부)	최기홍(고성지부)
조대연(양구지부)	전영국(경주시부)	김국환(원주NSC지부)
이종하(인제지부)	이종민(삼척지부)	

■ 제주 지부본부		
김익수(본부지부)	고영현(신제주지부)	강성숙(제주NSC지부)
김성호(본부지부)	고종건(서귀포지부)	
문준영(제주지부)	김경호(성산포지부)	

IPTV 주요쟁점

“이해관계로 4년 시간만 낭비”

IPTV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IPTV 서비스의 성격과 적용법률, 인허가방식,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시 분사 여부, 사업권역 등 4대 쟁점에서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IPTV 방송법 개정 vs '광대역융합서비스 제정'

정통부는 IPTV는 실시간방송과 부가통신서비스가 합쳐진 '광대역융합서비스'로 새로운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 (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방송위는 TV와 오디오, 데이터방송이 결합한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로 규정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통부가 정의한 성격은 영국 커뮤니케이션법의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ECS) 사업과 비슷하며 방송위가 제시한 IPTV 서비스 성격은 미국 커뮤니케이션법의 다채널영상제공사업(MVPD)과 유사하다. KT는 방송법 개정이나 광대역융합서비스법 제정 어느 것도 관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케이블TV방송협회는 IPTV는 디지털 케이블TV와 같은 방송서비스이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업자로 허가' vs '전송사업자로 등록'

IPTV 인허가 방식과 관련 정통부는 전송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위는 방송사업자로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전송사업인 IPTV 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네트워크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해야 하며,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송사업인 IPTV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규제를 완화하되 콘텐츠에 대한 방송법상의 규제는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사업면허 부여는 방송통신위가 담당하되 기구통합 이전에는 정통부·방송위 공동관할 채택시 정통부 장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방송위는 IPTV 서비스 성격과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IPTV에 대한 방송법의 허가체계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송위는 "소규모 SO사업자의 통신전송사업(기존 부가통신)을 기간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해 허가제로 강화시킨 반면 네트워크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공중을 대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방송 서비스 제공사업을 등록제 요건으로 하자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KT, IPTV 진입시 자회사로 분리' vs '투자유인 감소'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진입제한 쟁점에 대해 방송위는 진입을 허용하되 자회사로 분리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통부는 자회사 분리 의무화는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제한 문제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 또는 망 개방 논의다. 방송위의 주장은 시장지배력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는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을 전면 허용할 경우 방송시장의 지배력 전이와 또 다른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출 기회를 봉쇄하는 폐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후발주자인 KT가 사업 개시 1년만에 하나로통신을 제치고 부동의 1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것은 네트워크의 지배력 전이 결과로 보고 있다. 또 경제적 측면의 경쟁활성화 관점뿐 아니라 다양성 확보라는 방송산업의 사회문화적 목표 추구의 관점에서 지배력 전이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방송위는 주장했다.

이밖에 별도 법인화를 해야만 내부보조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분사로 네트워크 접속과 임대 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다른 사업자의 비차별적 네트워크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도 KT는 국내 네트워크 독립,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시장 등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배력 전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공기업 시절 구축된 독점 인프라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부당하게 IPTV 서비스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자회사 분리를 통한 진입을 주장했다.

KT는 자회사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망개방(동등접근권 사전 보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일정기간 이후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KT는 규모 있는 사업자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콘텐츠산업 활성화, 국가 인프라 개선 시급 ▲소규모 자회사를 통해서 뉴미디어 활성화 불가 ▲사업 효율성 확보 미흡으로 서비스 요금 상승 등을 내세웠다.

정통부도 네트워크사업자의 서비스사업 차단

시 망투자 유인 감소로 산업발전의 인프라인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체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회사 분리를 의무화하기보다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지배력 전이 규제 방안으로 서비스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실제로 특정 네트워크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여유설비에 한해 동등접근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또 네트워크 미보유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망이용 대가 산정이 핵심적 변수라고 덧붙였다.

사업권역 '전국화' vs '권역별'

IPTV의 사업권역에 대해 정통부는 전국사업권역으로 사업자 자유훈을 맡기자는 입장인 반면 방송위는 SO와 같은 전국 77개 권역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면허/전국면허가 가능하며 사업자의 '크림 스킴링(Cream Skimming)' 방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통부는 인터넷망의 특성상 IPTV에 사업권역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수익성이 높은 지역과 계층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크림스키밍 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적 서비스 영역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전국 사업권역 하에서도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 지상파방송을 해당지역 가입자에 한해 전송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위는 지역면허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위는 사업자 자율로 사업권역을 선택하는 경우 대도시나 아파트 밀집 지역만 대상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림스키밍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IPTV 방송권역도 SO의 77개 권역을 기준으로 하고 전체 방송권역의 20%인 MSO의 소유제한 규정을 IPTV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KT는 전국단위 서비스로 추진되 시장점유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음도 권역별 사업자 지정은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송위의 IPTV 도입방안은 IPTV 지연작전이다

지역면허·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 정책은 케이블 TV사업자 기득권 유지용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 방송위원회는 IPTV 도입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방향을 밝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기업의 자본참여 확대,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신설, 유선멀티미디어방송 지역면허로 일원화, 거대통신사업자의 별도법인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KT·동등조합은 방송위원회의 정책방안이 멀티미디어방송의 활성화보다는 기존 케이블TV사업자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별도법인 설립 추진은 케이블TV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2. 방송위원회의 시대착오적인 지역면허 발상
방송위원회가 이용자 접근권 확보와 지역방송 활성화 계속 도모 등의 이유를 들어 지역면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접근권의 불평등 구조를 막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방송위원회가 우려하는 도심중심의 선택적 서비스를 막기 위해서는 점유율 제한이나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면허의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역면허는 오히려 멀티미디어의 경향인 커뮤니티 케이션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방송사업자의 카르텔을 고착화시켜 지금의 케이블TV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방송위원회의 IPTV도입 방안은 맞불작전을 통해 대선정국까지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KT·동등조합은 방송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통신방송융합 사업을 가로막지 않길 바란다. 또한 IPTV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의 책임에서 방송위원회도 절대 비켜갈 수 없음을 주지하길 바란다.

[성명] IPTV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분리 방안을 반대한다

임시 국회를 앞두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IPTV 도입 방안과 이를 둘러싼 법제화를 위해 집중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활로를 차단하여 통신인프라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체의 경우 기존 유무선시장의 정책과 포화로 인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 중 하나가 IPTV이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마다 자회사 분리로 강제 규제한다면 기존 기간통신사업체의 내일은 심각한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으며, 또 누가 새로운 사업을 위한 노력과 준비, 투자를 하겠는가?

IPTV 도입은 불필요한 논쟁 등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지체되어 기술개발과 국제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도입을 서둘러야 할 제도이다. 그런데 융추위 논의 과정 중 IPTV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의 방안으로 일정 규모의 자회사 분리를 의무화하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IT강국 원천인 통신 인프라 위축을 가져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많음에도 자회사 분리 방안을 주장하는 실제 의도는 무엇인가?

첫째, 자회사 분리는 자본과 기술의 취약으로 IPTV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IPTV는 이제 그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향후 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와 기술 개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때 늦은 IPTV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각계의 역량을 집중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도리어 사업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위성DMB와 위성 스카이 사업 등에서 경험하지 않았던가?

IPTV 활성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임에도 불필요한 자회사 분리 주장은 한마디로 일부 사업자의 계산된 이해와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숨겨진 의도가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둘째, 자회사 분리는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

자회사 분리는 결국 신기술 개발과 투자로 인해 중부투자가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IPTV의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IPTV사업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동안 IPTV 도입을 2004년부터 선언하고, IPTV 시범사업이 포함된 광대역 통합망(BcN) 시범사업을 추진해 온 주체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일정규모의 네트워크 사업자이다.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해오고, 이미 수 천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왔으며, 향후 IPTV를 통해 또다시 IT강국으로서 한국의 경쟁력을 펼칠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도입을 앞두고, 일정 규모의 네트워크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전을 차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셋째, 자회사 분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이다.

우리의 IPTV 사업은 국내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세계 기간통신사업자중 IPTV사업을 분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말인가?

이에 IT산업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은 IPTV의 조속한 도입과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국민을 위한 질 좋은 IPTV서비스 사업이 되도록 융추위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15일

넷째, 자회사 분리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체의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UNI-APRO 뉴질랜드 회의

민영화 이후 조합원 고용스트레스 논의



2월23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인도 등 동아시아태평양지역 8개국 통신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제8회 UNI-APRO 통신분과회의가 열렸다.

첫날 개최식과 더불어 2006년 3월 1일~3월 2일 P&MS 일본 도쿄회의, 3월 25일~3월29일 파키스탄 대참사(2005년 8월) 위로 방문, 4월 24일~25일 UNI Apro 회의 인도 뉴델리 개최, 9월 20일~21일 동아시아 회의 한국 서울 개최 등 UNI APRO의 통신분과 활동을 되 돌아 보았다.

이후 뉴질랜드 노동부와 정통부 직원, 뉴질랜드 텔레콤 노동조합이 초청되어 뉴질랜드 통신이 어떻게 해서 낙후됐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통신회사 간 경쟁을 통하여 충분히 통신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과 올바른 투자(investment)와 올바른 규제(regulation)없이 단지 경쟁만으로는 통신 시장에서 결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뉴질랜드 텔레콤간의 첨예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각 나라별 통신회사의 민영화, 구조조정 등에 대한 국가동향보고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KT노동조합은 1987년 KT의 민영화 발표의 배경, 외국인 자본 개

방, 구조조정 과정, 현 FTA진행 과정에 대해서 발표했다. 참가 노동조합들은 이중 KT의 민영화 실시와 이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피로를 해결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호주의 통신노조는 조합원들이 스트레스와 고용불안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날에는 아웃소싱, 휴대폰 회사 노동자들의 조직화, 통신분야의 전문직 및 관리직 노동조합 설립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통신분야의 조직화에 대해서 논의했다.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하여 콜센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콜센터의 통신분야에 높은 임금과 관심결여로 대부분 노동조합 설립이 미미한 휴대폰 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2007년~2008년 UNI APRO 통신 워크플랜을 확인하고, 2007년 4월 21일 그리스 아테네 통신 세계대회 이후 UNI APRO 회의를 갖기로 약속하고 폐회했다.

한편, 이번 UNI APRO회의의 뉴질랜드 개최는 뉴질랜드 텔레콤 민영화 당시 국제 투기자본에 매각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많은 조합원이 일터를 잃은 곳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고배당정책으로 투기자본의 수익률만 높이고 시설투자 미비로 인하여 민영화 실패의 대표적이라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회의의 주된 주제인 통신산업의 민영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할 수 있겠다.

UNI-KLC 집행위, 여성위 회의 개최



UNI-KLC 집행위와 여성위의 합동 회의가 22일 IT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소속 조직들의 행사로 회의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시기 성등을 고려해 서비스연맹, 보건노조, KT노조, IT 연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안전으로는 UNI Global staff meeting 보고, 각 분과별 보고등이 있었다.

UNI Global staff meeting은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는 각 지역과 나라에 있는 직원들과 본부 직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토론을 도모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2007년도 UNI 사업의 목표와 활동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는 2007년도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흥

보강화와 캠페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조됐다.

특히 사업진행시 노조의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여 각종 교육/조직사업을 새롭게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분야와 보건의료분야등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경계에 있는 섹터에 대한 UNI의 지원을 요청했다.

각 분과 별 회의에서 UNI-APRO/NWJ 통신포럼은 4월 11일-12일 도쿄에서 개최되기로 확정되고, UNI-세계통신분과대회는 4월 20-21일 그리스 아테네로 확정되었다. 단, 방콕에서 개최예정이었던 UNI-APRO는 장소의 안전성을 고려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변경 조정되었다.

이외에도 국내의 사업으로 UNI-KLC의 공동국제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사회복지학과와 육아정책에 대한 사업 논의를 진척시켰다. 한편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저지 투쟁에서 미국의 AFL-CIO동지들의 연대 과정이 소개되었다.

(http://www.uni-klc.or.kr 참조)

유니폼 지급기준

구 분	유 형	기 준			변 경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주기(착/년)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주기(착/년)	
동계유니폼	작업복	작업복A	1. 케이블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2. 창고업무 담당직원	조끼, 셔츠, 바지, 모자	1/1	1. 케이블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2. 창고업무 담당직원	조끼, 셔츠, 바지, 모자	1/1
		작업복B	1. 망간설센터 공사감독 중 외근직원 2. 현업기관 전력실, 전송실, AMC팀, PMC팀, 도서통신팀의 실(室)근무직원 중 통신설비 운용직원 3. 기계보일러실, 고지 중계소 근무직원	조끼, 셔츠, 바지	1/2	1. 현업기관 선로운영실(EM 포함), 전력실, 전송실, 기술지원팀, PMC팀, 도서통신팀의 실(室)근무직원 중 통신설비 운용직원 2. 기계보일러실, 고지 중계소 근무직원 3. 망간설센터 공사감독 중 외근직원	조끼, 셔츠, 바지	1/2
		작업복C	1. 작업복 B형 2번 항목 지급 대상 부서 외 현업기관 모든 실(室)근무직원 중 통신설비 운용직원	조끼, 바지	1/2	1. 작업복 B형 1번 항목 지급 대상 부서 외 현업기관 모든 실(室)근무직원 중 통신설비 운용직원	조끼, 바지	1/2
		작업복D				1. 기관차, 작업복/고객방문복 지급대상 관련 부서장	조끼	1/2
	고객방문복	1. 고객설비 운용직원(전용시설 A/S 포함)	조끼, 바지, 셔츠, 넥타이	1/1	1. 고객설비 운용직원(전용시설 A/S, 메가미즈요원 포함)	조끼, 바지, 셔츠, 넥타이	1/1	
	여직원복	1. 지사/지점 고객센터팀 창구 및 창구 2선 근무 여직원 2. 여직원복 지급 대상자중 임신부	자켓, 조끼, 블라우스 2, 치마/바지 택2 원피스1	1/2 1/1	1. 지사/지점 고객센터팀 창구 및 창구 2선 근무 여직원 2. 여직원복 지급 대상자중 임신부	자켓, 조끼, 블라우스 2, 치마/바지 택2 원피스1	1/2 1/1	
방한복	방한복A	1. 케이블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2. 고객설비 운용직원(전용시설 A/S 포함)	상의, 하의	1/2	1. 케이블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2. 고객설비 운용직원(전용시설 A/S, 메가미즈요원 포함)	상의, 하의,	1/2	
		1. 창고업무 담당직원 2. 고지중계소 근무 직원 3. 망간설센터 공사 감독 중 외근직원 4. 작업복 B,C형 지급대상 직원 중 외근직원	상의	1/3	1. 창고업무 담당직원 2. 고지중계소, 전력실, 전송실 근무 직원 3. 망간설센터 공사 감독 중 외근직원 4. 작업복 B형, C형 지급대상 직원 중 외근직원 5. 작업복 D형 지급대상자	상의	1/3	
	방한복B	1. 케이블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2. 고객설비 운용직원(전용시설 A/S 포함)	상의, 하의	1/2	1. 케이블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2. 고객설비 운용직원(전용시설 A/S, 메가미즈요원 포함)	상의, 하의,	1/2	
		1. 창고업무 담당직원 2. 고지중계소 근무 직원 3. 망간설센터 공사 감독 중 외근직원 4. 작업복 B,C형 지급대상 직원 중 외근직원	상의	1/3	1. 창고업무 담당직원 2. 고지중계소, 전력실, 전송실 근무 직원 3. 망간설센터 공사 감독 중 외근직원 4. 작업복 B형, C형 지급대상 직원 중 외근직원 5. 작업복 D형 지급대상자	상의	1/3	
하계유니폼	작업복	작업복A	1. 케이블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2. 창고업무 담당직원	조끼, 셔츠, 바지	1/1	1. 케이블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2. 창고업무 담당직원	조끼, 셔츠, 바지, 모자	1/1
		작업복B	1. 망간설센터 공사감독 중 외근직원 2. 현업기관 전력실, 전송실, AMC팀, PMC팀, 도서통신팀의 실(室)근무직원 중 통신설비 운용직원 3. 기계보일러실, 고지 중계소 근무직원	조끼, 셔츠, 바지	1/2	1. 현업기관 선로운영실(EM 포함), 전력실, 전송실, 기술지원팀, PMC팀, 도서통신팀의 실(室)근무직원 중 통신설비 운용직원 2. 기계보일러실, 고지 중계소 근무직원 3. 망간설센터 공사감독 중 외근직원	조끼, 셔츠, 바지	1/2
		작업복C	1. 작업복 B형 2번 항목 지급 대상 부서 외 현업기관 모든 실(室)근무직원 중 통신설비 운용직원	조끼, 바지	1/2	1. 작업복 B형 1번 항목 지급 대상 부서 외 현업기관 모든 실(室)근무직원 중 통신설비 운용직원	조끼, 바지	1/2
		작업복D				1. 기관차, 작업복/고객방문복 지급대상 관련 부서장	조끼	1/2
	고객방문복	1. 고객설비 운용직원(전용시설 A/S 포함)	조끼, 바지, 셔츠, 넥타이	1/1	1. 고객설비 운용직원(전용시설 A/S, 메가미즈요원 포함)	조끼, 셔츠, 바지, 넥타이	1/1	
	망사조끼	기준 미제정(2006년한 1착 지급)			1. 작업복A형, 고객방문복 지급대상 직원	조끼	1/1	
여직원복	1. 지사/지점 고객센터팀 창구 및 창구 2선 근무 여직원 2. 여직원복 지급 대상자중 임신부	자켓, 치마/바지 택2 원피스1	1/2 1/1	1. 지사/지점 고객센터팀 창구 및 창구 2선 근무 여직원 2. 여직원복 지급 대상자중 임신부	자켓, 치마/바지 택2 원피스1	1/2 1/1		
	우의	1. 케이블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2. 고객설비 운용직원(전용시설 A/S 포함)	상의, 하의	1/2	1. 작업복A형, 고객방문복 지급대상 직원	상의, 하의	1/2	
우의/신발류	작업화	1. 케이블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2. 기계보일러실 근무직원		1/1	1. 작업복A형 지급대상 직원 2. 현업기관 기계보일러실 근무직원	작업화	1/1	
	안전화	1. 케이블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 2. 고객설비 운용직원(전용시설 A/S 포함), 3. 현업기관 전력실, 기계보일러실 근무직원 4. 창고업무 담당직원		1/3	1. 작업복A형 지급대상 직원 1. 고객방문복 지급대상 직원 2. 현업기관 전력실, 기계보일러실 근무직원 3. 창고업무 담당직원	안전화	1/1 1/2	
		단화(구두)	1. 고객방문복 지급 대상 직원		1/1	1. 고객방문복 지급 대상 직원	단화	1/1

*** 참고사항 ***

○ 지급대상자 이외의 직원으로서 지급대상 직종과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지급대상자에 준하여 지급
○ 외근직원의 기준 : 근무표상 외근 비중 30% 이상 직원

○ 작업복A형, 고객방문복은 디자인 변경 초기년도 및 최초 발행 시 유니폼 2착(조끼2, 셔츠2, 바지2, 모자 또는 넥타이 2) 및 해당 우의신발류 지급
○ 창고업무 지급대상자는 선로시설창고(물류센터, 현업기관 선로시설창고 등) 운용자에 한함(사무소내 소형창고 담당자는 제외)